M - 178 - 2014

베니어 절단기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

2014. 11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 :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김태구 교수
- 제·개정 경과
 - 2014년 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관련 규격 및 자료
 - HSE, WIS 20 (Woodworking Information Sheet No 20(Revision 1))
- 관련 법규·규칙·고시 등
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(안전인증대상 기계·기구 등) 제1항의 2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4년 11월 27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M - 178 - 2014

베니어 절단기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베니어 절단기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베니어 절단기를 사용하는 작업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베니어(Veneer)"란 나무를 두께 1~4 mm 정도로 얇게 썰어 만든 널로, 여러 개의 널을 접착제 등으로 압축시켜 만드는 목재나 합판 등의 소재가 되는 판을 말한다.
 - (나) "클램프(Clamp)"란 체결하는 부품 또는 도구로서, 가공물을 부착하기 위해 또는 중량물을 이동 운반할 때에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3. 베니어 절단기의 유해·위험요인

베니어 절단기의 재해는 주로 칼날 구동부, 클램프 구동부 등 기계의 구동부에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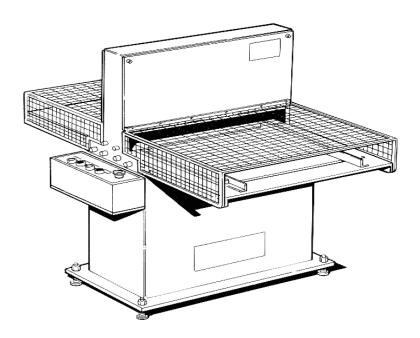
M - 178 - 2014

발생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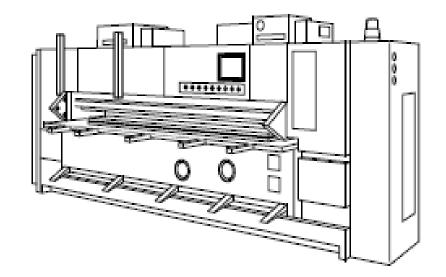
- (1) 베니어 절단기 사고의 대부분은 작업자가 날을 교체하는 과정이나 칼날을 세 척하는 과정에서 칼날과의 접촉 등에 의해 발생된다.
- (2) 변속 기계와 접촉하거나 고정된 기계장치와의 접촉으로도 발생한다.

4. 베니어 절단기의 방호조치

4.1 베니어 절단기 정면에서의 방호



<그림 1>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와 고정식 가드를 설치한 베니어 절단기



<그림 2>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와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설치한 베니어 절단기

- (1) <그림 1>과 같이 베니어 절단기의 정면이 개방된 경우, 안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정식 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대부분의 경우 <그림 2>와 같이 인터록 가드나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사용한다. 두 가지의 방호장치는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와 같이 사용되어야 한다.
- (3) 인터록 가드를 사용할 때는 가드의 틈에 손이나 손가락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.
- (4) 가드가 개방되었을 때 칼날과 클램프 및 움직임에 작업자가 접촉하기 전에 작동이 멈추어야 하고, 가드가 닫히기 전까지 칼날과 클램프에 어떠한 움직임도 있어서는 안 된다.
- (5) 광전자식 방호장치 및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인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, 주기적으로 방호장치의 작동 상태 등을 점검 하여야 한다.
- (6) 절단 작업 중의 위험한 상황에서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칼날과 클램프를 정지 하거나 작업자가 칼날과 클램프에 접근하기 전에 기계는 작동을 멈추도록 한다.

M - 178 - 2014

(7) 안전시스템이 복구되어 완전히 보호된 조건이 되기 전에 칼날과 클램프가 작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.

4.2 베니어 절단기 측면과 후면에서의 방호

- (1) 칼날이나 클램프의 측면과 후면에서의 접근은 고정식 혹은 인터록 가드가 있는 경우라도 제한되어야 한다.
- (2) 베니어 절단기 후면에서 스크랩(Scrap)을 제거할 때, 후면의 가드는 스크랩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. 예를 들어 적합한 갈퀴의 사용, 인터록 가드 또는 자투리 통(Off-cut bin)의 사용 등으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.
- (3) 인터록 가드나 자투리 통(Off-cut bin)으로 접근을 방지한 경우, 칼날과 클램 프는 단일 제어 인터록 시스템으로 충분하다.
- (4) 인터록 시스템은 가드가 개방되어 있을 때나 자투리 통(Off-cut bin)이 제거되었을 때에 칼날과 클램프의 동작이 정지되거나 작업자가 접촉하기 전에 기계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.
- (5) 또한, 가드가 닫히기 전까지 클램프나 칼날의 어떠한 움직임도 없어야 한다.

5. 베니어 절단기 작동 시 주의사항

인터록 가드나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설치된 기계들은 양손으로 조작하는 경우만 절단을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.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라야 한다.

- (1) 두 개의 조작버튼은 별도로 위치되어야 하고, 부주의한 조작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- (2) 조작버튼을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거리에 있거나, 한 손과 신체의 다른 부위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.

M - 178 - 2014

- (3) 베니어 절단기가 완전히 자동으로 작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, 조작이 지연될 경우 지체 없이 클램프와 칼날의 하강은 정지되어야 한다.
- (4) 각각의 조작부가 0.5초 이내에 작동되었을 경우에만 절단의 시작 또는 프로 그램을 시작할 수 있게 해야 한다.
- (5) 풋 스위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.
 - (가) 풋 스위치는 불시의 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.
 - (나) 풋 스위치가 정상작동 여부를 작업 전 점검해야 한다.
 - (다) 풋 스위치는 페달에 발을 올려두고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.

6. 유지·보수

- (1) 가드와 방호장치의 주기적인 유지관리와 검사는 안전한 작동을 위해 필수적이다.
- (2) 베니어 절단기는 공급자/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수되고 검사되어야 하며, 보수 및 검사 결과는 문서 기록으로 유지되어야 한다.
- (3)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작업자와 칼날. 클램프 간에 물리적 벽을 두지 않는다.
- (4) 방호장치의 효과는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클러치와 브레이 크의 성능 또는 제어 신호에 의해 확실하게 제어되는 유압 제어 밸브의 성 능에 의존한다.
- (5) 각 공정의 시작부분과 칼날 교체 후 수행하는 점검을 포함하여, 엄격한 안 전 검사 순서와 방법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.

M - 178 - 2014

7. 교육과 훈련

- (1) 작업 시 필요한 방호장치는 설치하여 사용해야 하며,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작업자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.
- (2) 작업자들에게 특히 유지·보수 및 청소와 같은 비정상 작업 시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정상 작업 시 안전조치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, 베니어 절단기의 위험성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.
- (3) 베니어 절단기 작동 시 지정된 작업자에 의해 조작되어야 하며, 작업자는 베니어 절단기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(4) 장비의 감독을 맡게 된 감독자는 반드시 적절한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, 작업자와 감독자들은 기계설비와 관련된 정보와 설명서 등을 열람할 수 있 어야 한다.